

# 아동 관련 전문가의 위촉 등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안

## 1. 개정이유

- 「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(재특 82-1)」 개정(2025. 2. 1. 시행)에 따라 집행보조자로 참여하는 유아 관련 전문가의 위촉, 해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 「아동 관련 전문가의 위촉 등에 관한 내규」에 추가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- 「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에 관한 예규(재특 82-1)」에 따라 집행보조자로 참여하는 유아 관련 전문가의 위촉, 해촉 및 평가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조)
- 유아 관련 전문가의 위촉 등, 경력카드 작성 및 관리, 평가의 절차를 아동 관련 전문가와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함(안 제2, 3, 4조)
- 현행 「아동 관련 전문가의 위촉 등에 관한 내규」에 따라 위촉되어 있는 아동 관련 전문가를 「유아 및 아동 관련 전문가의 위촉 등에 관한 내규」에 따라 유아 및 아동 관련 전문가로 위촉된 것으로 봄(안 부칙 제2조)

## 3. 아동 관련 전문가의 위촉 등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안

붙임과 같음

#### 4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## 아동 관련 전문가의 위촉 등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안

아동 관련 전문가의 위촉 등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아동 관련 전문가의 위촉 등에 관한 내규” 를 “유아 관련 전문가 및 아동 관련 전문가의 위촉 등에 관한 내규” 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(재특 2024-1)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” 를 “「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에 관한 예규(재특 82-1)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집행보조자로 참여하는 유아 관련 전문가 및 「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(재특 2024-1)」 제5조 및 6조에 따라” 로 한다.

제2조의 제목 “(아동 관련 전문가의 위촉 등)” 을 “(유아 및 아동 관련 전문가의 위촉 등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“아동 관련 전문가” 를 “유아 및 아동 관련 전문가(유아 관련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아동 관련 전문가인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” 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아동” 을 “유아 및 아동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아동” 을 “유아 및 아동 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아동” 을 “유아 및 아동 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「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(재특 2024-1)」 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” 를 “유아 및 아동 관련 전문가를 「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에 관한 예규(재특 8

2-1)」 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및 「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(재특 2024-1)」 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”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아동” 을 “유아 및 아동” 으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아동 관련 전문가의 경력카드 작성 및 관리)” 를 “(유아 및 아동 관련 전문가의 경력카드 작성 및 관리)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아동” 을 “유아 및 아동” 으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아동 관련 전문가에 대한 평가)” 를 “(유아 및 아동 관련 전문가에 대한 평가)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아동” 을 “유아 및 아동” 으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내규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라 아동 관련 전문가로 위촉된 사람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아 및 아동 관련 전문가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아동 관련 전문가의 위촉 등에 관한 내규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「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 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(재특 2024-1)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집행보조자로 참여하는 아동 관련 전문가의 위촉, 해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아동 관련 전문가의 위촉 등)            ① 법원행정처장은 가정법원장(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추천을 받아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에 필요한 적정 수의 <u>아동 관련 전문가</u>를 위촉 또는 재위촉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연도 중에도 <u>아동 관련 전문가</u>를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유아 관련 전문가 및 아동 관련 전문가의 위촉 등에 관한 내규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에 관한 예규(재특 82-1)</u>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집행보조자로 참여하는 <u>유아 관련 전문가</u> 및 「<u>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(재특 2024-1)</u>」 제5조 및 6조에 따라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<u>유아 및 아동 관련 전문가의 위촉 등</u>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유아 및 아동 관련 전문가(유아 관련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아동 관련 전문가인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</u>----- ----- 유</p>

② 가정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의 요청에 따라 아동 관련 전문가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아동심리학, 정신의학, 상담학, 아동복지학 등 아동과 연관된 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추고, 집행보조자로 참여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별지 1 양식의 추천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③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아동 관련 전문가로 위촉 또는 재위촉할 사람에 대하여 면접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아동 관련 전문가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.

④ 제3항은 「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(재특 2024-1)」 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해촉하려는 경우에도 준용한다.

⑤ 법원행정처장은 아동 관련 전문가를 위촉, 재위촉하거나 해촉

아 및 아동 -----.

② -----  
----- 유아 및 아동 -----  
-----  
----- 유아 및 아동 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③ -----  
유아 및 아동 -----  
-----  
----- 유아 및 아동 -----  
-----  
-.

④ ----- 유아 및 아동 관련 전문가  
를 「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에 관한 예규(재특 82-1)」 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및 「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(재특 2024-1)」 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-----.

⑤ ----- 유아 및 아동 ---  
-----

한 경우 그 사실을 각급 법원장, 지원장 및 집행관사무소 대표 집행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3조(아동 관련 전문가의 경력카드 작성 및 관리) 법원행정처장은 아동 관련 전문가를 위촉한 경우 별지 2 양식의 경력카드를 제출받아 관리하여야 하며, 경력카드를 자료화한 후 집행관이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각급 법원장, 지원장 및 집행관사무소 대표 집행관에게 제공한다.

제4조(아동 관련 전문가에 대한 평가) 집행관은 아동 관련 전문가를 집행보조자로 참여시킨 경우 해당 사건의 집행이 완료된 날(집행 불능의 경우에는 집행 불능이 된 날을 말한다)부터 15일 이내에 아동 관련 전문가의 업무수행에 대한 별지 3 양식의 평가서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----  
-----  
-----.

제3조(유아 및 아동 관련 전문가의 경력카드 작성 및 관리) ----- 유아 및 아동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4조(유아 및 아동 관련 전문가에 대한 평가) ----- 유아 및 아동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유아 및 아동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[별지1 양식]

**【유아 및 아동 관련 전문가 추천 대상자 명단】**

연번	성명	생년월일(성별)	추천 사유

※ 추천 대상자가 해당 법원에 상담(자문)위원 등으로 위촉되어 있는 경우 이력서, 경력카드 등 전문분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별지2 양식]

【유아 및 아동 관련 전문가 경력카드】

성 명	한글		생년월일 (성별)	. . . (남, 여)
	한자			
주 소	(자택) (사무실)			
연 락 처	전화		팩스	
	휴대폰		이메일	
직 업				
소속 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관명:</li> <li>• 풀타임 / 파트타임</li> <li>▶ 주 ( )회, 하루 ( )시간</li> </ul>		현 기관 근무 연수	년 개월 (20 . . . 임명)
전문분야 (구체적 기재)			학위 내용	
자 격			자격취득 연월일	
최종학력	. . . (졸업·수료·중퇴)			
주요경력				
주요 저서, 논문				
가정법원 사건 및 집행보조자 참여 관련 경력 (상세, 최근 순)	법원명	사건번호	비고	
소송 사건의 당사자로 된 사항이 있는지 여부(현재 계속 중인 경우 포함)				
은행명		예금주		
계좌번호				
기타 사항				

【유아 및 아동 관련 전문가 평가서】

평가 대상자(집행보조자): ○○○

법원명 (담당 집행관)		사건번호	
사건 당사자		채권자(부, 모) / 채무자(부, 모) / 아동(연령: 만    세)	
집행 일시	1차	. . . :	1차
	2차	. . . :	2차
	3차	. . . :	3차
<b>유아 및 아동 관련 전문가에 대한 평가</b>			
평가 항목		평가 의견	
준비	집행보조자의 참고 자료 또는 정보 제공 요청 집행관과의 사전 미팅 (유선 또는 대면)	① 아주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아주 높음	
	사건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	① 아주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아주 높음	
실시	유아·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조치	① 아주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아주 높음	
	유아·아동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	① 아주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아주 높음	
	유아·아동 또는 채무자와의 면담	① 아주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아주 높음	
	집행관에 대한 협조도	① 아주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아주 높음	
결과	집행보조자 참여의 효과 (문제해결, 심신안정 등)	① 아주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아주 높음	
<b>기타 의견(장점, 개선할 점, 재위촉 여부 등)</b>			